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교육인프라 공유활용 사업계획 요약 -

2025. 2.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I.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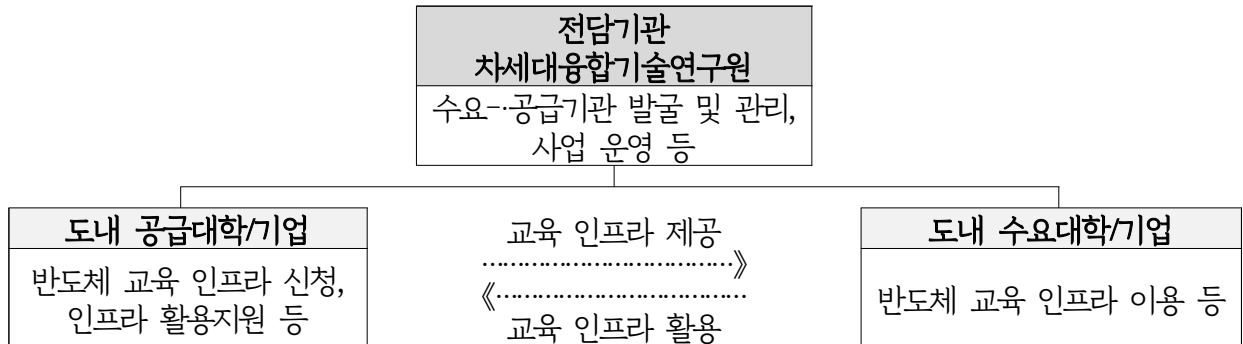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01. ~ 2025.12.
- (사업예산) 사업비 300백만원
- (전담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반도체 교육환경 편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공유활용 참여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 도내 대학 및 기업 간 반도체 교육 실습인프라 공유 지원을 통한 현장형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 참여기관(수요·공급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인프라 활용제안서 평가(연 2회 이상 예정) 후 공유활용 실시
 - 공급기관 기보유 장비 활용 실습 중심 (전체교육 대비 60% 이상)의 운영
 - 운영비 지원 (실습비, 장비 운영비, 강사비, 실습조교 인건비 등)

II. 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내용

1 사업 목표 및 운영 체계

□ 사업 운영 체계



- (전담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도내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발굴 및 관리하고, 교육인프라 공유활용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교육인프라 활용 연계 지원
- (수요기관) 공유활용 신청을 통한 도내 공급기관의 교육인프라 이용
- (공급기관) 수요기관 대상 교육인프라 제공 및 수익 확보

기관 구분		자격조건
수요기관	대학	경기도 소재 학사 및 전문학사중 반도체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
	기업	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 및 반도체 관련 교육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공급기관	대학	경기도 소재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반도체 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
	기업	경기도 소재이며,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교육이 가능한 반도체 관련 분야 기업

□ 사업 목표

구분	사업 목표
반도체 교육 인프라 공유활용	○ 반도체 교육 수요가 많은 대학간 교육인프라의 격차 및 편차 해소 ○ 기관의 기보유 유휴 교육 인프라 가동을 통한 실무형 반도체기술인력 양성 (연간 10회 및 300명 교육 목표)

2

세부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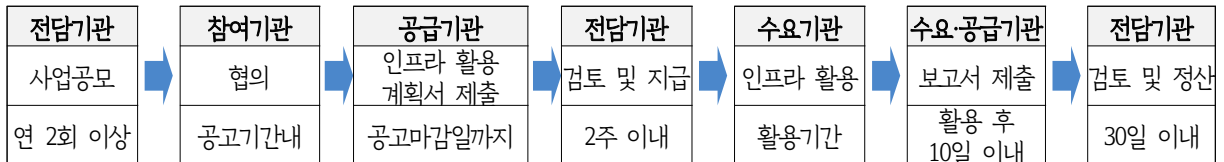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추진방향) 도내 대학 및 기업 간 반도체 교육 실습 인프라 공유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편차 해소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 반도체 관련 기업
- (지원예산) 300백만원(선정된 공모 회차별 최대 30백만원)
 - 신청 1회당 30백만원 및 교육과정* 최대 3개 이내로 수요·공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자율 결정(교육과정별 1인당 교육비 1백만원 이하)

*연내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과정 종료일은 11월 이내 必

□ 추진절차

- 전담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반도체 교육인프라 공유활용 사업을 공모 (연 2회 이상 예정), 수요·공급기관의 인프라 활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을 통한 공유활용 지원비용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추진내용

- 수요·공급기관 교류
 - 도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공급기관이 지원 가능한 인프라 및 교육과정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공유 추진
 - 수요·공급기관 참여 성과공유회 개최: 공급기관의 보유 인프라·교육과정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 교육인프라 사업 운영
 - 도내 대학 간 반도체 인프라의 편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공급기관이 보유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수요기관 교육(동일 기관 내 사업 지원 불가)
 -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한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이 목적으로 도내 재학생 및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교육
 - 전체 교육시간 중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60% 이상으로 배정하며, 수요기관 수강자가 공급기관 현장에서 교육 수강

구분	세부조건
공유대상	도내 타 대학/기업 간 공유 ※ 동일 대학(기관) 내 불가
교육대상	4년제 및 전문학사 학부생, 재직자 교육 ※ 연구 전용 우려로 대학원생 불가
교육방식	수요기관 학생/재직자가 공급기관 현장으로 이동하여 교육 진행
교육내용	공급기관의 교육인프라(실습장비) 활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전체 교육시간 중 실습시간을 60% 이상 배정 必
교육규모 (시간·학생수)	공유활용 1회 한도(30백만원) 내에서 수요·공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제안서 심의 과정에서 교육내용·규모 대비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예산은 1회당 최대 30백만원 내에서 교육비(최대 3개 과정) 산정 (간접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산정)

구분	세부항목
교육장·교육장비·재료	교육장·교육장비(라이선스 포함) 이용료, 실습 재료비 등
교강사	교·강사 지원비 (외부 강사 활용 가능), 교육조교 지원비 등
기타	기숙사비, 식비, 이동수업에 따른 교통비 등(차량대절 등)

※ 교육 시간과 과정 및 인원에 따른 인건비, 교육장·장비 이용료 등을 계상하여 산정하며, 교육 소요비용은 공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책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산출예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단위: 천원)

RCMS	항 목	금액	산출내역
연구활동비	장비·시설·라이선스 사용료	4,800천원	라이선스 사용료 : 100천원/일/인×2일×20인=4,000천원 시설 사용료 : 400천원×2일=800천원
	재료비	500천원	실습 키트: 20천원×20개=400천원 기타 부품 구입: 100천원
	교강사료	1,600천원	이론 강사료 : 200천원/시간×6시간 = 1,200천원 실습 강사료 : 40천원/시간×10시간 = 400천원
	조교비	800천원	실습보조 : 40천원/시간×10시간×2인= 800천원
	기숙사, 식비, 교통비 등	1,400천원	식비 : 9천원/인 × 20인 × 2일 = 360천원 간식비 : 9천원/인 × 20인 × 2일 = 360천원 버스대절 : 300천원/일 × 2일 = 600천원 보험 : 2천원 × 20명 × 2일 = 80천원
간접비		900천원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간접비 산출 필수사항 아님)
소계		10,000천원	약 500천원/인 (교육인원: 20명)

- 사업비 집행기준 및 증빙자료 (공급기관용)

RCMS	항목	집행기준	증빙자료
연구활동비	장비·시설·라이선스 사용료	· 교육에 필요한 장비 임차, 라이선스 사용, 시설 임차 등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공급기관 내부 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00만 원 이상 지출/구매 건 일 경우 제출) ·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비용집행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서 등) · 검수 관련 증빙자료(검수조서/사진/라이선스 설치(납품)완료확인서 등) ·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재료비	· 교육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재료 구입 비용	※ 기관 자체 연구시설 사용 시 비교견적서는 생략 가능(단, 장비 이용료 단가 기준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교강사료 (전문가활동비)	□ 교강사 ·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한 인력(담당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 조교비 ·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보조한 인력(보조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 사업 참여 인력(기관 내부 인력 포함) 지급 가능	· 공급기관 내부 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등) · 전문가/조교 인적사항(프로필/이력서 등) · 전문가/조교 활용 증빙자료(강의시간, 강의수당, 서명, 사진 포함) · 전문가/조교 수당 지급증명서(계좌이체증명서 등) ※ 단가는 공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근거자료(내부규정) 제출 필수)

연구활동비	기타 (식비, 교통비, 제본비 등)	·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비용 ·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기타 · 공급기관 내부 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등) · 관련 증빙자료 · 비용집행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2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도 제출)/거래명세서 등) □ 식비, 간식비 · 카드사용 권장 ※ 식비는 종일 교육에 한해 가능 (식비+간식비 합산 일 18,000원/인 초과 불가, 예시: 식비 9,000원/인, 간식비 9,000원/인) · 공급기관 내부 결재문서(계획안/품의서/결의서) (계획 상 식비 지원, 인원, 단가 등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용집행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출석명단 등) □ 주차비 · 외부인 제공에 한함(교육 대상자, 강사 등) · 비용집행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참석자 확인 문서 등)
간접비	간접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참여기관이 일반기업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불인정